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전화 피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하여 방송한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96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6. 4.

처리결과 : 취하(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은 SBS가 음란전화 피해자인 자신에게 요청한 인터뷰를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성을 녹음,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이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건은 취하되었고, 15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현장 핫이슈! 한밤중에 걸려온 공포의 음란전화』 제하의 보도(2010년 5월 20일)

내 용 : ▷기 자 : 한밤중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음란한 목소리. 한밤중 여자를 공포에 떨게 한 음란전화, 그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중략)

▷기 자 : 한밤중 음란전화를 받는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인데요. 실제 피해자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김○○ : 그냥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생각에서는 네,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자막: (사건 관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앵커 : 떠올리기 싫은 악몽 같은 기억. 다행히 지난 18일 피의자가 구속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인물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현석 경장(용산경찰서) : 택시기사인 피의자가 콜택시를 이용한 20대 여성 승객들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새벽시간대,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 발신자 표시로 전화를 해서 음란전화를 수차례 건 사건이고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하게 됐습니다. (중략)

[방송 자막: 녹취록 내용]

* 누구세요? 오빠라니까... 깜짝 놀랐지? 목소리 들으니까 미치겠다.

* 누구신데요? 나, 미치겠어. 네 생각만 하면. 나 있잖아, 너 안아주고 싶어. 미치겠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원

교육프렌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연장을 통보하고, 위약금을 부과해 가맹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078 · 107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잉글리쉬 무무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피신청인 언론사가 조정대상 기사에서 신청인 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까지 배상하도록 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신청인 업체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업체는 보도내용 관련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계약연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사를 게재한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포털업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하였다.

조정심리결과, 당사자 간 정정보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네이버 등 포털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닷컴 : 『‘잉글리쉬 무무’ 본사 - 가맹점 법리해석 공방』 제하의 보도(2010년 6월 15일 경제 섹션) 내 용 : 가맹사업법 조항의 법리 해석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갈등의 장본인은 교육프렌차이즈 ‘잉글리쉬 무무’ 와 가맹점들로 이들은 60일 이전 가맹계약 서면통보를 두 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잉글리쉬 무무와 10개 가맹점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60일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 은 점포에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통보를 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도록 해 갈등을 빚고 있다.

잉글리쉬 무무 가맹점주 A 씨는 지난해 11월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의 계약기간은 같은 해 12 월 31일까지로 가맹사업법상의 60일 이전 통보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 본사의 계약서 조항에도 60일 이전 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알려야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300여만 원을 본사에 지불해야 했다.

A 씨처럼 잉글리쉬 무무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맹점들은 대략 10개 정도로 대부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을 통해 합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합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조 정원을 통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개별적인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 남짓한 위약금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위약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본 사의 법무팀과 장기간 법정공방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가맹점이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잉글리쉬 무무는 계약서의 조항에 가맹 해지 시 60일 이전 서면통보 부분을 명시했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명시해두었기 때문이 다. 일부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수정된 날짜 이전에 계약한 이들에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잉글리쉬 무무 측은 “경쟁사 가맹점으로 옮겨가는 악성 점주들 때문에 부득이 위약금 조항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참여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창업컨설턴트들도 이번 사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창업컨설턴트는 “잘잘못을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계약시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보호법이 2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가맹사업법의 60일 이전 계약해지 통보는 본부와 가맹점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무조건 점주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해석여부에 따라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프랜차이즈 잉글리쉬 무무는 가맹점수 1,060개를 보유했으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맹점주들 가운데 60일 이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직전 3개월 평균 차시관리율(한 달 평균 교재 사용 의무량-원생 1인당 한 달 교재 주문량)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위약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맹사업법의 법리 해석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론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 보호를 명목으로 개정된 법안이 반대로 가맹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과 조정원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잉글리쉬 무무’ 본사 - 가맹점 법리해석 공방” 바로잡습니다. (또는 “‘잉글리쉬 무무’ 본사 - 가맹점 법리해석 공방”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위 기사를 통하여 잉글리쉬 무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법리해석 공방으로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고, 본사가 가맹점의 계약만료 60일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토록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맹 계약을 위반한 일부 가맹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동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잉글리쉬 무무 본사의 주장이 모두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지는 ㈜잉글리쉬 무무가 계약만료 60일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60일

전에 해약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와 관련해 (주)잉글리쉬 무무는 문제가 됐던 10개 가맹점과의 분쟁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7월 16일까지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이낸셜뉴스닷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10년 7월 16일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배우 전지현의 휴대폰 불법도청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업무에서 물러났으며, 현 소속사가 배우 전지현과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086 · 108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외 1

피신청인 : 스포츠조선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 대표가 전지현의 휴대폰을 불법 도청하는 사건으로 싸이더스 HQ에서 물러났으며, 전지현 씨와 싸이더스 HQ 사이에 문제가 있어 전지현 씨가 작품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정○○ 대표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사건과 무관하고 싸이더스 HQ에서 물러난 적이 없으며, 전지현 씨와 소속사의 관계 역시 원만하여 작품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마이데일리를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심리결과, 정정보도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마이데일리에 대해서는 구두 유감표명을 전제로 신청을 취하하였다.

보도내용

스포츠조선 : 『전지현, 드라마 컴백 끝내 불발 왜?』 제하의 기사(2010년 5월 28일자 23면)

내 용 : 전지현의 드라마 컴백이 끝내 불발됐다. 전지현은 당초 이승기 주연의 SBS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와 비 주연의 KBS 2TV ‘도망자’를 놓고 저울질했으나, 드라마 컴백을 내년으로 미뤘다.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제작진의 강력한 러브콜과 ‘도망자’ 주연인 비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전지현이 드라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지현의 한 측근은 “소속사와의 계약 및 정산할 여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전지현은 지난 13년간 자신을 발탁하고 스타로 발돋움시켜준 정○○ 대표의 싸이더스 HQ와 일 해왔다. 그러나 2008년 전지현 휴대폰 불법 도청 사건이 발생하자, 싸이더스 HQ와의 관계에 금이 갔다. 물론 정○○ 대표가 싸이더스 HQ 일에서 물러났고, 전지현도 소속사와 2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 대표가 지금도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회장직을 맡아 싸이더스 HQ뿐 아니라 여러 연예기획사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치자, 전지현이 홀로서기 준비에 나선 것. 그는 전담 매니저와 함께 1인 회사를 차리거나 투자 회사에 들어가는 방안 등 여러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전지현의 측근이 새 소속사를 차리기 위해 여러 투자자를 만나고 있다. 싸이더스 HQ와는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셈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계약 문제 및 정산해야 할 돈 문제 등이 있어서 선불리 새로운 작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소속사를 나온 뒤 새 회사에서 차기작을 고를 것 같다. 빠르면 내년 초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현의 전속 계약금은 업계에서 2년에 10억 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아직도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셈.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줄 연예기획사가 없어 1인 회사를 차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편 전지현은 국내가 아닌 해외 활동에 현재 주력 중이다. 중국에서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를 촬영 중이며, 올 하반기 이번 작품 프로모션과 CF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는 2010년 5월 28일자 연예면에 ‘전지현, 드라마 컴백 끝내 불발 왜?’란 제하에 “2008년 정 대표가 전지현의 휴대폰을 불법 도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싸이더스 HQ와의 관계가 금이 갔으며 정 대표가 싸이더스 HQ일에서 물러났고… 전지현 매니저가 새 소속사를 차리기 위해 여러 투자자를 만나고 있다. 싸이더스 HQ와는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셈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계약 문제 및 정산해야 할 돈 문제 등이 있어서 선불리 새로운 작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불법복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사 대표는 2009년 4월 16일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 대표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정 대표는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싸이더스 HQ)의 사내이사로서 매니지먼트 사업 및 제작사업, 해외네트워크 개발, 신성장동력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지현 씨와 소속사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새로운 작품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전지현 씨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싸이더스 HQ) 및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보도를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전지현, 드라마 컴백 끝내 불발 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사실 확인 결과, 정○○ 대표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사건과 무관하고 싸이더스HQ에서 물러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지현 씨와 소속사의 관계는 원만하며 작품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7월 3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조선> 연예면 광고 위 우측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고 <스포츠조선>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구미호’ 등 저울질 중 무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조선 : 『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 28일자 전지현 씨 관련 기사』 제하의 기사(2010년 7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인의 횡령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도록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1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남경필(국회의원)

피신청인 : 한국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7.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신청인의 처가 매매가 28억 원 대의 회사를 3억 원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매번 기각해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외압설이 불거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부인은 형사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심리결과, 반론 및 정정보도하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 제하의 기사(2010년 7월 24일자 종합 5면)

내 용 : 부인 피소사건 압수수색영장 7차례나 기각... ‘사찰 표적’ 된 듯, 담당 경찰관 “외압설 불거지자 발부... 이미 증거 빼돌려”

남경필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7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실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남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쯤 남 의원 부인 L 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L 씨가 매매가 28억 원대 회사를 회계사 한 모 씨에게 3억 원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됐고 이후 재신청을 거듭했지만 통틀어 7번이나 반려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압수 영장이 7번이나 기각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1년 가까이 기각되기를 거듭하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외압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결국 경찰의 8번째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바로 발부됐다. 하지만 경찰이 L 씨 사무실을 덮쳤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사실상 텅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외부로 빼돌려 증거를 하나도 확보할 수 없었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관실이 조사에 나선 이유도 검찰에 외압이 들어가 영장이 거듭 기각됐다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쯤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말쯤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남경필 의원 검찰 외압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10. 7. 24.자 종합 5면에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28억 원대의 회사를 3억 원에 팔아넘긴 사실로 고소되자 남경필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고 그 사이 증거를 빼돌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남경필 의원의 부인은 28억 원대의 회사를 3억 원에 팔아넘긴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며, 남경필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보 7월 24일자 5면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기사에서 ‘부인이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고소당하자 남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남 의원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럴 마음도 없었다”며 검찰에 대한 외압설을 일축했다.

한편, 남 의원 부인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내용을 다뤘던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한국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한국일보>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10년 8월 11일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 개혁 작업 대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이라는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19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5.

처리결과 :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고질적 내부 부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추진 중인 개혁 작업 대부분이 포상제도 개선 등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된 개선안은 전체 64개 과제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64개 과제 대부분이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 시스템과 문화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심리결과,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보도내용

문화일보 : 『‘경찰개혁’ 부를 ‘경찰개혁안’』 제하의 기사(2010년 7월 30일자 6면)

내 용 : 경찰이 유착 비리 등 고질적 내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 중인 경찰 개혁 작업 가운데 대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 방안에는 포상제도 개선, 경찰관 명예의 전당 설립, 공상 휴직 기간 연장 등 경찰의 근무 조건 개선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돼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30일 경찰청 경찰개혁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기획단 회의에 올라온 안건 10건 중 4건은 포

상제도 개선, 명예의 전당 설립, 공상 휴직 기간 연장,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경찰관 근무 조건 개선 정책이었다.

포상제도 개선은 현행 상점 제도를 특별 휴가 등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며, 경찰 명예의 전당은 순직 경찰 등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경찰박물관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상 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고, 지역경찰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과 경찰을 증원하고 운영경비도 증액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 경찰만을 위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 안건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볼 수 있는 건 ‘공손한 언어 사용’, ‘습관 바꾸기 운동’ 등 캠페인성 정책 2가지 정도다. 그 외 나머지 안건도 현장 인력 재배치, 체계적 인적자원 관리, 민간조사제도 도입, 첨단과학수사 집중 육성 등 매년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경찰 내부의 행정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조사제도 도입도 퇴직 경찰관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 이후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관 경무·생활안전·수사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심의관 등 경찰 수뇌부들이 모여 경찰개혁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경찰은 각종 유착 비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강도 높게 내부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기획단 출범 후 1개월 뒤인 지난 6월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민간감찰위원회 구성, 공짜 문화 금지’ 등의 개혁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최근 경찰 개혁 논의가 근무 조건 개선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목: 경찰개혁 관련 반론보도문

2. 내용: 본 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6면에 「‘경찰개혁’ 부를 ‘경찰개혁안’」이라는 제목으로 7.27 ‘경찰개혁 추진기획단’에서 논의된 10개 과제와 관련하여 경찰개혁 과제 대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날 논의된 ‘근무여건 개선’ 등 10개 과제는 경찰개혁 과제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경찰관 자질향상’, ‘공직기강 확립’, ‘제도·문화개선’ 등의 분야에 걸쳐 총 64개 과제가 있고, 보도된 바와 달리, 64개 과제 대부분이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 시스템과 문화를 쇠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7.27 논의된 10개 과제 역시 경찰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현장 치안력 강화 및 직무몰입도 제고’로 일선 경찰관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경찰개혁을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 건 : 2010서울조정119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89

청장 강 희 락

조정대리인 조○○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조정대리인 노○○

결 정 일 : 2010. 8. 19.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문화일보 2면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는 문화일보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 목 : 알려드립니다.

2. 내 용 : 본보 지난 7월 30일자 「‘경찰개혁’ 부를 ‘경찰개혁안」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고질적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면서, 27일 열린 경찰개혁추진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10개 중 4개가 경찰관 근무 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어서 경찰 개혁 작업이 대부분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기획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8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관 자질향상’, ‘공직기강 확립’, ‘제도·문화 개선’ 등 총 6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7월 27일에 진행된 8차 회의에서 논의된 10개 과제는 전체 추진과제의 일부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현장 치안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혀왔다. 